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11 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 : 허 영 · 윤준병 · 박상혁

주철현 • 박민규 • 임호선

진성준 • 전재수 • 한민수

정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(塡補)받을 수 있으나,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, 공정거 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,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 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4조제4항 중 "제110조 및 제115조"를 "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"제40조제1항, 제45조제1항(제9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51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"은 "제34조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"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손해배상 책임) ① ~ ③	제34조(손해배상 책임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	4
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	
경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	
에 관한 법률」 <u>제110조 및 제</u>	제110조부터 제11
<u>115조</u> 를 준용한다. < <u>후단 신</u>	<u>5조까지</u> . <u>이 경우</u>
<u>설></u>	<u>"제40</u> 조제1항, 제45조제1항(제 <u>9</u>
	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51조제
	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
	한 손해배상청구소송"은 "제34
	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
	해배상청구소송"으로 본다.